

## 2.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# 심 사 보 고 서

2003 . 12 . 16 .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11월 18일 · 종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1월 24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
제4차 시민행정위원회(2003. 12. 16)상정 · 의결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병 하)

##### 가. 개정이유

- 일·숙직자에 대한 당직수당의 현실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당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당을 인상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한편, 방법원의 직급비용으로 사문화된 방법수당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# 나. 주요골자

- 목적규정에 실비보상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(안 제1조).
- 현행 “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”를 “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”로 명칭을 변경하고,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0,000원 인상 조정함(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, 별표 1 및 별표 2).
- 사문화된 방법수당 규정을 삭제함(안 제3조).
- 종전의 일·숙직비 지급은 국가기준의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으나,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,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당직수당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).
- 현행 1인당 1회 10,000원 ⇒ 1인당 1회 35,000원으로 인상조정

#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생 략

#### 4. 결의 및 답변 요지 (생 략)

5. 토 론 요 지 (없 음)

6. 수 정 안 의 요 지 (없 음)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